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February 03,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인도: 사전 가격 합의(APA) 프로그램 보고서

CBDT(Central Board of Direct Taxes)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프로그램에 대한 6 번째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며, 2023 - 2024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다음의 진행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APA 프로그램 시작 이래 한 해 동안 125건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APA가 체결
-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일본, 싱가포르, 영국 및 미국 등과의 상호합의 결과로 총 39건(소급 포함 18건 포함)의 쌍방 APA가 체결되었음
 - 체결 건의 APA대상기간 합계는 총 183년(52년의 소급 기간을 포함)
 - 총 181건의 국제거래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156건의 거래가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으로 벤치마킹됨
 - 쌍방 APA 신청서의 절반 이상이 미국과 이루어짐
 - 쌍방 APA 체결을 위한 평균 소요시간은 약 65.61개월임

- 주로 IT 산업, 은행 및 보험,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신, 전력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업종에서 86건의 일방 APA가 체결(17건은 소급연도 포함)
 - 체결 건의 APA대상기간 합계는 총 420년(56년의 소급 기간을 포함)
 - 총 224건의 거래가 다섯 가지 다른 방법으로 벤치마킹되었으며, 이 중 TNMM이 126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됨

보고서는 "인도 APA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세수 동원이 아니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 정부에 확실한 세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결된 641 건의 APA로 인해 약 2,500 억 루피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확정되었으며, 약 750 억 루피의 세금 납부로 이어졌습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중국: 사전 가격 합의(APA) 프로그램 보고서

STA(State Taxation Administration)은 2024년 12월 26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프로그램에 대한 15 번째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며, 2005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국에서 시행된 APA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설명하였습니다:

-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96건의 APA가 체결되었으며, 이 중 153건은 일방 APA이고 143건은 쌍방 APA임. 2023년에는 36건의 APA가 체결되었으며, 이 중 9건은 일방 APA이고 27건은 쌍방 APA임. APA 체결 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2023년에는 쌍방 APA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023년에 체결된 27건의 쌍방 APA 중 14건은 신규 APA이고 13건은 갱신임. 2023년은 2022년 대비 13건이 증가한 총 60건의 의도단계의 APA가 발생함
- APA 소요시간과 관련하여 2023년에 체결된 9건의 일방 APA는 모두 24개월 이내임. 27건의 쌍방 APA 중 13건은 24개월 이내에 체결되었고, 14건은 체결하는 데 24개월 이상임
-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세무 당국이 체결한 143건의 쌍방 APA 중 99건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되었으며, 이는 전체 양자 APA의 약 70%임. 2023년에 체결된 27건의 쌍방 APA 중 22건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됨
- 2023년에 성공적으로 체결된 36건의 APA 사례 중 28건은 제조업, 6건은 도매 및 소매업, 1건은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1건은 기타 산업과 관련이 있음. 특수 당사자 거래 관점에서, 36건은 유형 자산 거래와 관련이 있고, 12건은 무형 자산 거래, 13건은 서비스 거래, 1건은 금융 거래와 관련됨
- 2023년까지 체결된 APA 중 거래 순이익률 방법(TNMM)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총 299회로 사용된 방법의 83%를 차지함. 다른 방법 중에서는 원가가산방법(CPM)이 21회, 이익분할방법(PSM)이 14회,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이 10회 사용됨. 2023년에 성공적으로 체결된 36건의 APA 사례 중 TNMM은 41회, 기타 방법은 5회, CUP은 2회, 재판매가격방법(RPM)은 1회, PSM은 1회 사용됨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사전-2024-법규국조-0693, (2024.12.10)

제목: 내국법인이 그 소속 임직원 파견을 통해 말레이시아법인에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 14 조 제 1 항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 57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폴리실리콘 및 카본 블랙 등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폴리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법인('A법인')과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 자신의 소속 임직원을 말레이시아에 파견하여 A법인의 말레이시아 공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였음

<갑법인의 기술용역 제공 내용>

| 구분 | 인원 | 수행 업무 |
|---------------|----|---|
| 공장 건설 프로젝트 총괄 | 1 | 장 건설 프로젝트 설계, 구매, 공사 관리 총괄 업무 수행 및 유관 부서(구매·총무·안전 부서 등)와 협의의 업무 수행 |
| 계기 설계팀 | 2 | 공장 건설 및 운영 관련 계기 설계, 적합한 계기 구매, 계기가 공정 및 공사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에 관한 현장 관리, 안전 관리 |
| 전기팀 | 3 | 공장 건설 및 운영 관련 전기설비 설계, 외부 구매 및 전기설비가 공정에서 적절히 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현장 관리, 전기 공사업체 현장 관리 |
| 배관팀 | 2 | 공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배관 설비의 설계, 외부 구매 및 배관 공사업체 현장관리 |
| 기계팀 | 2 | 공장 건설 및 운영 관련 기계 설계 업무, 기계 설계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구매 업무, 기계 공사 업체 현장관리 업무, 기계 품질 및 안전 관리 업무 |
| 토목·건축팀 | 1 | 공장 건설 및 운영 관련 |
| 생산팀 | 3 | 분산제어시스템(Distributed Control System)의 교육 및 공정 관리 업무 |
| 총계 | 14 | |

- 위 말레이시아 공장건설 이후에도 갑법인 소속 임직원들은 말레이시아에 계속 체재하면서, 해당 공장에서 공장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사고 수습 등의 기술지원용역(‘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갑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위 갑법인 소속 파견 직원들의 총 급여에 8.5%를 가산한 금원을 쟁점용역대가로 지급받으면서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쟁점세액’)을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함
- 한편, 갑법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A법인과 “기술 및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이 보유한 상표권 및 노하우 등의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법인은 갑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함

2.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법인과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여 말레이시아 산업용 소재 제조공장에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해당 공장운영과 관련한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원천징수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한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원천징수된 위 세액이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외국 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내국법인(갑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A법인)과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A법인이 운영하는 산업용 소재 제조 공장에 갑법인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위 파견직원들이 해당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기계·설비 관리 및 공정 관리 등의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쟁점세액’)이 있는 경우, 쟁점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

03 관세

2025년 관세행정 관련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개요

2024년 12월 31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를 주관으로 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며 관세행정을 포함한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 확대, RCEP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 확대 등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수출입 기업의 관세 편의가 향상되는 제도적 간소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2025년 관세행정 주요 개정안 | 적용 시기 |
|---------------------------|------------|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 확대 | 2025.01.01 |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 | 2025.01.01 |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 2025.01.01 |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 2025.01.01 |
| 원산지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 | 2025.01.01 |
| RCEP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 확대 | 2025.01.01 |
|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 2025.01.01 |

2. 주요 제도 개정사항

1)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 확대

- 화주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 명의인이 아닌 화주*'에게도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

* 화주: 화물을 자기의 책임 아래 수출입하는 사람

** 단,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한함

- 수출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는데, 현재 수출입신고필증은 신고 명의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입을 신고한 화주는 세무신고·무역금융 신청 등을 위해 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 했음.
- 신고 명의인이 아닌 화주도 직접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화주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

-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국제우편물로 수출하는 경우 통관우체국을 지정 반입 장소로 규정하지 않아 관세환급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을 국제우편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지정 반입장소에 통관우체국*을 추가함.

* 통관우체국: 국제우편물류센터, 인천해상교환국, 부산국제우체국

- 해당 수입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 반입장소는 기존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에 통관우체국을 추가함.

3)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스스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 사전심사·재심사한 품목분류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4)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 사전심사 제도 활용 대상과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제도 활성화 및 협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활용대상 및 심사범위가 확대됨.

* 협정관세율 적용 기초 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이 미리 심사하는 제도

-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 추가될 예정(2025년 3월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임.

5) 원산지 등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

- 협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됨.

* 원산지 등을 사전심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교부

- 협정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 내용을 변경 가능 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이 없는 협정의 경우에도 국내법에 근거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
-

6) RCEP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 확대

- 수출입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RCEP*에서 합의되는 내용에 따라 일본·호주·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해당 나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상기에 따른 RCEP 원산지 자율증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됨.

7)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 반복적인 관세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가 시행됨.
- 세관의 관세조사팀에서 3회를 초과하여 관세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앞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조사 중지가 가능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조사 절차요건을 강화하는 제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관세조사 중지사유 등을 엄격하게 검토할 계획임.
- 다만, 납세자의 요청에 의한 관세조사 중지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됨.

3. 시사점

2025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행정의 주요 제도 변경은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수출입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의 간소화와 제도 활용의 확대를 통해 수출입 기업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들은 변화된 제도와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